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 2차 의회 운영 위원회 의

소통과 공존, 신뢰받는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31호)

2024. 8.

의회 운영 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131호
- (발의자) 유인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 (발의일) 2024년 8월 16일
- (회부일) 2024년 8월 19일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은 행정 주체가 제정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만을 가질 뿐 대외적 효력이 없어 대외기관과 개인 등에 일반적으로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는 포상 기준 마련(안 제10조제5항)
- 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및 신청절차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제22조)
- 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등을 위한 서식(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 바. 종전 예규의 집행 전반과 관련되는 경과조치 등(부칙 제2조)

## 3. 참고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 III. 검토의견

### 1. 개정취지

- 본 개정안은 현행 내부 규정으로 규율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과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여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포상대상자 추천 기준 신설(안 제10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p><b>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b></p> <p>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5인 이상과 기관·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제2항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p> <p style="margin-left: 2em;"><u>&lt;신 설&gt;</u></p>	<p><b>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기준) ①</b></p> <p>~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color: red; margin-left: 2em;"><b>⑤ 그 밖에 포상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b></p>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포상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이에 포상대상자의 추천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sup>1)</sup>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상자의 적격성 기준 및 포상 기준의 제한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포상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행정안전부 '24. 정부포상 업무지침 <III. 포상기준(17면부터 44면까지)>

- 포상기준의 일반원칙 및 포상의 대상(일반국민, 공무원, 퇴직공무원, 외국인 등), 포상기준의 예외 등을 규정  
 ※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되, 각 기관장은 기관의 특수성 및 표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해 운용할 수 있음

## 나.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및 신청절차 등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6조~안 제22조)

- 안 제16조는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사전 차단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내부규정인 「세종특별자치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절차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제2항<sup>2)</sup>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행사의 요건을 명시한 것은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후원명칭 사용 행사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1조제1항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요건을 열거한 바, 후원명칭의 권위와 공신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성 확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임.

###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후원명칭 사용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의미와 가치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후원명칭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2) 제16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만, 후원명칭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사용에 있어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정비하는 만큼,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참고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 2) 광역의회 포상·후원명칭 관련 자치법규 현황

(참고 3) 광역의회 포상·후원명칭 관련 자치법규 조문 등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포상”을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포상대상자의 추천)”을 “(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포상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각종 행사에 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되는 명칭 등을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단체 및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개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3.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접수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서류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시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행사 일정 및 장소
2. 행사계획서(주요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 3.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제18조(사용승인 검토 · 통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행사 목적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 점검) 의장은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관리대장의 작성 · 비치 등) 의장은 후원명칭 승인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행사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행사와 관련하여 허위광고나 선전 등을 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2.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후원명칭 사용자의 보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행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행한 포상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장이 행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6호서식]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제17조 관련)

기관 · 단체	명 청				
	소재지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대표자		이 메일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기 간				
	장 소				
	행 사 목 적				
	주요행사내용				
	주최(주관)기관명				
	후원 예정 기관명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별지 제7호서식]

##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제20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 후원명칭 사용승인 행사결과보고서(제22조 관련)

후원명칭 사용내용						
기관 단체	명칭					
	소재지					
	전화		팩스		홈페이지	
	대표자		이메일		생년월일	
행 사 결 과	행사명					
	행사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행사개최내용					
	안전사고 등 현황					
	특기사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후원명칭을 사용한 행정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 [불임1]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u>	<u>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행하는 <u>포상</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u> -----.
제10조( <u>포상대상자의 추천</u> ) ① ~ ④ (생 략) <u>&lt;신 설&gt;</u>	제10조( <u>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기준</u>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포상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u>&lt;신 설&gt;</u>	제16조( <u>후원명칭의 사용승인</u>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각종 행사에 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되는 명칭 등을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

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법

인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

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  
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  
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단체 및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  
한다.

<신 설>

제17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  
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  
청인”이라 한다)는 행사개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  
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  
리계획 포함)

3.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  
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접수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서류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행사 일  
정 및 장소

2. 행사계획서(주요 내용과 참가자  
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3.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제18조(사용승인 검토·통보) ① 의장

<신 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서류  
를 종합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  
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행사 목적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초  
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  
용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신 설>

제19조(지도 · 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  
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다.

#### <신 설>

제20조(관리대장의 작성 · 비치 등) 의  
장은 후원명칭 승인의 관리를 위하  
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  
여야 한다.

#### <신 설>

제21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행사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행사와 관련하여 허위광고나 선  
전 등을 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  
하고 행사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향  
후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  
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  
인이 취소된 경우

2.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  
우

3. 제22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행  
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2조(후원명칭 사용자의 보고) 후원  
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행  
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불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개정으로는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유인호

## [불임3] 관계 법령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시행 2023.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학생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1. 9. 24.>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과와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8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5인 이상과 기관·단체의 장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제2항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의회사무처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개정, 2023. 10. 4.>>

제13조의2(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관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2278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시행 2021. 8.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명칭, 문장, 휘장, 로고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①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단체 및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전문적인 안전관리 및 예산의 지원이 요구되는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개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안전 관리계획 포함)
  3.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접수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통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행사 목적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 ② 의장은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지도 · 점검) 의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 · 점검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의 작성 · 비치 등) 의장은 후원명칭 승인의 통계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취소) ① 의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허위 · 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에 앞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제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당현·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

- 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 · 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 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 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 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 시설의 개소 · 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 · 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 · 합당대회 · 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 · 화분 ·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 · 방법 등을 확대 · 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마.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 친목단체 및 사회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현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 ·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아. 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 · 시 · 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개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짠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담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돋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 · 자선행위

-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 · 직원, 유관기관 · 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 · 효부 · 모범시민 · 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 구두미화원 · 가두신문판매원 ·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 · 시 · 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아. 변호사 · 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 · 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 · 수첩 · 탁상일기 · 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

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 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참고 2 광역의회 포상 · 후원명칭 관련 자치법규 현황 (2024.07.기준)

	시·도	자치법규 명	구분	비고
	<b>세종</b>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의회예규 제4호	
1	<b>서울</b>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의회예규 제155호	
2	<b>부산</b>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건		<b>내부검토</b>
3	<b>대구</b>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18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4	<b>인천</b>	인천광역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제1142호	<b>市 규정</b>
5	<b>광주</b>	광주광역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규정	훈령 제1347호	<b>市 규정</b>
6	<b>대전</b>	대전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규정	의회훈령 제34호	
7	<b>울산</b>			<b>없음</b>
8	<b>경기</b>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조례 제7735호	
9	<b>강원</b>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의회예규 제50호	
10	<b>충북</b>	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의회훈령 제90호	
11	<b>충남</b>			<b>후원명칭 사용안함</b>
12	<b>전북</b>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제13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조례 제5508호	
13	<b>전남</b>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제12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조례 제6015호	
14	<b>경북</b>			<b>내부검토</b>
15	<b>경남</b>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제17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조례 제5577호	
16	<b>제주</b>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제20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 제25조 결과제출)	조례 제3439호	

## 참고 3

## 광역의회 포상·후원명칭 관련 자치법규 조문 등 현황 (2024.07.7. 기준)

세종 예규(21.8.30.)	서울 예규(23.2.23.)	부산 내부검토	대구 조례(22.10.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승인대상 행사 제4조 사용승인 신청절차 제5조 사용승인 검토·보고 제6조 지도·점검 제7조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제8조 승인취소 제9조 결과제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승인대상 제4조 신청요건 제5조 사용승인의 기준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제7조 승인취소 등 제8조 점검 제9조 결과보고 제10조 기록의 보존관리 등	별도 규정 없음 내부 검토에 따름	제18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승인 ② 승인 요건 ③ 서류 신청 ④ 결과보고 제출
인천 市훈령(15.5.26.)	광주 市훈령(20.11.10.)	대전 훈령(11.5.4.)	경기 조례(23.8.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대상행사 제4조 신청의 접수 제5조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제6조 점검 제7조 승인취소 제8조 사용결과 확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심의·의결 제5조 하위과장 흥보 금지 제6조 사용신청 대상 제7조 사용승인 신청 절차 제8조 사용승인 기준 및 관리 제9조 지도·점검 제10조 승인취소 제11조 결과제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승인대상 행사 제4조 사용승인 신청절차 제5조 사용승인 검토·보고 제6조 지도·점검 제7조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제8조 승인취소 제9조 결과제출	제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승인 ② 승인 요건
강원 예규(23.6.11.)	충북 훈령(22.1.21.)	충남	전북 조례(24.5.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승인대상 행사 제4조 사용승인 신청절차 제5조 사용승인 검토·통보 제6조 지도·점검 제7조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제8조 승인취소 제9조 결과제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승인대상 행사 제4조 사용승인 신청 제5조 사용승인 검토·통보 제6조 대장의 작성관리 제7조 이행사항 지도·점검 제8조 승인취소 제9조 결과제출	별도 규정 없음 후원명칭 사용 안함	제12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승인 ② 요건 ③ 서류 신청
전남 조례(24.6.13.)	경북 내부검토	경남 포상·후원명칭조례(24.2.15.)	제주 포상·후원명칭조례(23.7.14.)
제12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승인 ② 요건 ③ 서류 신청 ④ 결과보고서 제출	별도 규정 없음 내부 검토(관행)에 따름	제17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승인 ② 요건 ③ 서류 신청 ④ 결과보고서 제출	제20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21조 사용승인 신청 제22조 지도·점검 제24조 승인취소 제25조 결과제출